

제 10 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제 10.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한쪽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그러한 조치는 다음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포함한다.

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

나. 서비스의 구매 또는 이용, 또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불

다.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유통, 운송 또는 통신 망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자국 영역에서의 주재

2.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

3.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0.4 조, 제 10.7 조 및 제 10.8 조는 상업적 주체를 통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도 적용된다.

4.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정기적인지 또는 부정기적인지에 관계없이 국내 및 국제 항공 운송 서비스를 포함하는 항공 서비스, 그리고 항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관련 서비스. 다만, 다음은 제외한다.

1)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 그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그리고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또는

다.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5. 이 장은 당사국에 자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 하거나 자국의 영역에서 영구적으로 고용된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으며, 그 접근 또는 고용에 대하여 그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

6. 이 장은 당사국의 영역에서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제 10.2 조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3 조 최혜국 대우¹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0.4 조 시장접근

어떠한 당사국도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산출량², 또는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의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² 3 목은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 또는

나.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0.5 조

현지주재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

제 10.6 조

비합치 조치

1. 제 10.2 조부터 제 10.5 조까지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또는

2) 지방정부³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10.2 조에 대하여 그 개정

³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또는

라.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10.3 조, 제 10.4 조 또는 제 10.5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 1 항라호는 양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비당사국과의 서비스 자유화 규정을 포함한 기준의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협정이나 유사한 약정에서 제 1 항라호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시점까지, 제 10.3 조, 제 10.4 조 및 제 10.5 조는 제 1 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10.3 조, 제 10.4 조 또는 제 10.5 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3. 제 10.2 조부터 10.5 조까지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 10.7 조

국내 규제

1. 당사국이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의무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승인 요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2.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3. GATS 제 6 조제 4 항과 관련된 교섭의 결과(또는 양 당사국이 참여하는 그 밖의 다자포럼에서 수행된 유사한 교섭의 결과)가 발효하는 경우, 그 결과가 이 협정에 따라 발효되도록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협의 후에 적절한 경우 이 조는 개정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그러한 교섭에 대하여 조율한다.

제 10.8 조 규정⁴의 개발 및 적용에서의 투명성

제 16 장(투명성)에 더하여,

가.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한 자국의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리고

나.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대상과 관련된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한다.

제 10.9 조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은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에서 면허의 승인 또는 기준을 제정하거나 이에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제 5 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이나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을 자율적으로 또는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제 10.3 조의 어떠한 규정도 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받은 면허나 증명에 대하여 그러한 인정을 부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 또는 자국 영역에서의 관련 기관에 의하여 체결된 어떠한 인정 협정 또는 약정에 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포함하여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4.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 1 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한쪽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할 때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지불 및 송금⁵

1.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관한 모든 송금과 지불이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국경 간 서비스 공급에 관한 그러한 송금과 지불이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과 관련한 자국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 또는 지불을 금지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 나. 유가증권,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거래 또는 취급
 - 다.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 라. 형사범죄, 또는
 - 마.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제 10.11 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그 비당사국과 정상적인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⁵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속서 9-마(송금)는 이 조에 적용된다.

나. 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기업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이 조의 목적상, 기업은 다음과 같다.

가. 인에 의하여 그 기업 지분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그리고

나. 인이 그 기업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기업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그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제 10.12 조

예외

1. 제 10.3 조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에서 기인한 모든 경우, 선호 또는 특권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존의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또는

나.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당사자가 될 미래의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

2. 양 당사국이 제 1 항나호의 예외를 포함하지 않는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 또는 통화동맹,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에 개별적으로 당사자인 경우 제 1 항나호의 적용이 종료된다.

제 10.13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란 항공기가 취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 내의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가. 기업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제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경 간 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이란 다음과 같은 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가.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서비스 공급

나.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서비스 공급, 또는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그러나 이는 적용대상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기업이란 제 1.7 조(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조직되거나 구성된 기업 또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점을 말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로이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⁶

⁶ 제 10.2 조 및 제 10.3 조의 목적상, “서비스 공급자”는 GATS 제 2 조 및 제 17 조에서 사용된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